

##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

| 구 분      | 건설기계관리법  | 산업안전보건법   |
|----------|--|---|
| 지게차 정의   | ○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. 다만,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. (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) | ○포크, 램(ram)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[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8호(위험기계·기구 방호조치 기준)제17조 관련]     |
| 사용 연료    | ○ 디젤, LPG, 배터리(전동식) 등  | ○ 배터리(전동식)  |
| 타이어 종류   | ○ 타이어식(공기주입식)<br>○ 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*<br>*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  |
| 운행 장소    | ○ 사업장내, 도로 등   | ○ 사업장내(도로 운행 불가*)<br>*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   |
| 운전 가능 자격 | 3톤 이상  | ① 「국가기술훈격법」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<br>②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|
|          | 3톤 미만  |   |